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40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년 12월 19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내용 중 “자문”과 “심의”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“심의·자문”으로 통일하고,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며, 위원의 결격사유 중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,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게 관한 사항을 삭제함.

2. 주요 골자

- 내용 중 “자문”과 “심의”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“심의·자문”으로 통일(안 제9조제1항~제3항)
-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구체화(안 제9조제4항)
-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는 개인,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한 위원 결격사유 규정 삭제(안 제9조제5항 삭제)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1항 중 “자문과”를 “심의·자문 등과”로 하고, “심의에”를 “심의·자문 등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문과”를 “심의·자문 등과”로 하고, “자문 등에서”를 “심의·자문 등에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심의에”를 “심의·자문 등에”로 한다.

안 제9조제4항 본문 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이 품위 손상, 장기 불참,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
안 제9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위원이 품위손상·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	<p>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) ① 위원 중 <u>자문과</u>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<u>심의에</u>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</p>	<p>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) ① 위원 중 <u>심의·자문 등과</u>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<u>심의·자문 등에</u>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</p>

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
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

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

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5. 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

안건의 공정한 심의·자문 등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위원이 품위 손상, 장기 불참,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
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) ① 위원 중 심의·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·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위원이 품위 손상, 장기 불참,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

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위원이 품위손상·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	<p>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 해제·결격사유) ① 위원 중 심의·자문 등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·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심의·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·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·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촉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. 위원이 품위 손상, 장기 불참,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.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
	<p>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